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6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이제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를 동 조례에 의거 관리해 오면서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므로써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가. 파주시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안 제2조 제1항)

나.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안 제4조 제1항)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체육회사무국운영 지원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안 제7조 제1항)

마.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11조 제1항, 제3항)

바.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안 제13조 제1항, 제3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파주시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체육회사무국운영 지원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5조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국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원칙에 준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